#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70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 송재봉·황정아·이광희

이수진 · 장종태 · 소병훈

임호선 · 김성환 · 이건태

김우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그 심의·의결에 상당한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위한 구제수단이 없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시행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최대 15개월이 소요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부터 지정 절차 진행 중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고, 소상공인과 대 기업 간 합의에 따라 체결한 상생협약이 대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중 도 파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를 보완·개선함으로써 영세 소상 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 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다.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 등의 의무불이행으로 상 생협약 지속이 어려운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7조의3 신설).
- 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기업 등이 사업 인수·개시 및 확장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구성과 임기, 회의 및 운영"을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및 회의록 작성·보관·공개"로 한다.

1의2. 제7조의2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3의2. 제11조제4항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이행명령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를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소상공인단체와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

- 을 "제6항"으로 한다.
  - 4.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생협약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생협약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품목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의2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없는 경우 생 계형 적합업종을 지체 없이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2(재심의 청구)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재심의·의결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소상공인단체에 통보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재심의 절차·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3(상생협약) ① 소상공인단체는 대기업등과 상생협력을 약속하

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지정 신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단체와 대기업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 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상생협약의 내용, 체결 절차,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업등이 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3조(상생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이후 체결된 상생협약은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생협약으로 본다.
- 제4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			
회) ①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	<b>ಶ</b> ) ①			
호ㆍ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				
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1의2. 제7조의2에 따른 생계형</u>			
	적합업종의 재심의에 관한 사			
	<u>항</u>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3의2. 제11조제4항에 따른 대기</u>			
	업등에 대한 이행명령에 관한			
	<u>사항</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			
	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			
	성・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u>구성</u> 과 임기, 회의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소상공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제2 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 3. (생 략) <u><신 설></u>

- ② (생략)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 성장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생 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

<u>한다.</u>
<u>⑤</u> <u>구성</u> ,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및 회
의록 작성·보관·공개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
<ol> <li>~ 3. (현행과 같음)</li> <li>4.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등이 정</li> </ol>
<ol> <li>~ 3. (현행과 같음)</li> <li>4.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등이 정 당한 사유 없이 상생협약의</li> </ol>
<ol> <li>~ 3. (현행과 같음)</li> <li>4.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등이 정 당한 사유 없이 상생협약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li> </ol>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등이 정 당한 사유 없이 상생협약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거나 상생협약이 지속되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생협약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생협약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등이 정 당한 사유 없이 상생협약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생협약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생협약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생협약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품목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생협약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생협약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품목 ② (현행과 같음)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신 설>

- ④ (생 략)
- ⑤ <u>제3항</u>에 따른 생계형 적합 업종의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 부터 5년으로 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 항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고시 후 시장의 현 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u>심의·의결 결과를</u>
해당 소상공인단체와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통보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
7조의2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없는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체 없이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u>⑥</u> 제4항
<u>⑦</u> <u>利</u> 6
<u>항</u>

아니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생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7조의2(재심의 청구) ① 제7조 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의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 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 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ㆍ의 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 회의 재심의 · 의결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소상공인단체에 통보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 ·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 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재심의 절차・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 조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 종의 지정・고시 당시 해당 업 종 · 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 기업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 제7조의3(상생협약) ① 소상공인 단체는 대기업등과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 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 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 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 인단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지정 신청을 철회 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 공인단체와 대기업등이 상생협 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 다.
  - ③ 상생협약의 내용, 체결 절 차,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 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조제4항-----

심의・의결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수량・시 설・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신 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제1</u> 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 할 수 있다.

<신 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
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
종의 지정을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해
당 사업의 인수 · 개시 또는 확
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항 및 제2항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업등이 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
<u>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u>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대기
- ㅁㅋ'ㅋㅋㅋ 뻐ㅂ 예ㅎ 네기

	<del></del>
③ <u>제1항</u> 의 권고에 관한 기준	<u>⑤</u> 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
<u>다.</u>				
⑤ 제1항 및	및 제 <u>2항</u>			